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지침은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윤리행위 신고에 대한 업무절차,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고자 및 조사자의 신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비윤리행위 신고보상 및 신분보호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1. “내부제보자”란 회사의 직원 및 거래회사(공급사, 하도급사, 용역사, 자문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의 임직원으로서 회사 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실제 또는 잠재적인 준법의무 위반사항을 알리거나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
2. “신고자”란 내부제보자와 외부에서 신고한 일반인을 말한다.

~~①   “금품”이라 함은 현금, 유가증권, 물품 및 기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②   “편의제공”이라 함은 금품 및 향응의 수수를 제외한 교통, 숙박, 관광안내 및 행사지원 등의 제공을 말한다.~~

~~③   “이해관계자”라 함은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 2 장  업 무 절 차

제 4 조 (업무절차)

①   신고의무

1.   회사의 임직원은 위반사실을 인지한 경우 신속하게 정도경영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이 직무관련 부당행위를 강요받거나 타인의 위반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정도경영실장은 인사위원회 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신고 및 조사방법

1. 비윤리행위 신고는 온라인, 우편, 전화, Fax, 방문, 기타 중에서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 웹사이트: [www.poscointl.com/reportCenter.html](http://www.poscointl.com/reportCenter.html)
* 정도경영실 방문

신고자가 익명으로 남길 희망할 경우, 회사는 신고자의 우려사항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자에게 구체적 사항 및 사실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2.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 6하 원칙에 의거 관련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신고시점 현재 진행 중인 비윤리행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할 수 있다.

3.   정도경영실은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신고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4.   비윤리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는 비밀유지를 원칙으로 하며, "감사업무지침"에 따라 수행한다.

③   통보방법

1.   정도경영실은 신고자가 감사결과에 대한 통보를 원할 경우 감사진행 단계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가. 신고접수 여부, 이첩 여부, 기타 조사관련 통보 사항은 해당사항 발생 인지 후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최종 조사결과 통보 시 정도경영실장의 승인을 득한 후 통보한다. 단, 단순 회신, 내부종결 등 별도의 조사없이 종결된 건은 담당 감사업무 조직장의 검토 후 통보할 수 있다. 단, 비밀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보는 제외할 수 있다.

제 3 장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 신분 보호

제 5 조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 신분보호)

①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 신분누설 및 색출 금지

1.   전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의 신분을 인지하였더라도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의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 소속 부서, 기타 관련부서의 임직원은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이 상기 ‘1호’에서 ‘2호’ 사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된 경우 정도경영실은 그 노출경로를 조사하여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소관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4.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었을 경우, 정도경영실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신분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5.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로부터 신분보호 요청을 받으면 정도경영실에서는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가 인사상 또는 기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직변경 등의 조치를 소관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의 인사이동 및 보직변경 등의 조치는 회사 내로 한정한다.

②   보복행위 금지

1.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는 신고를 이유로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업무상 불이익 등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정도경영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정도경영실은 업무상 불이익 등 보복행위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해 인사위원회 회부 등 관련규정에 의거 문책한다.

3.   정도경영실은 주기적으로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가 신고를 이유로 업무상 불이익 등 보복을 받고 있지 않은지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조사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상 및 심의

제 6 조 (보상금 지급행위)

신고자는 부패, 사기, 성적 착취 및 학대, 이해 상충 행위, 담합 행위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관련 법규, 회사 윤리규범 및 기타 준수방침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신고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신고보상이 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족 및 친인척 포함)~~

~~2.   이해관계자에게 향응접대 및 통상적 수준 이상의 식사나 회식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3.   이해관계자가 경비를 지급하는 골프모임 또는 회원권 이용행위(공식행사 제외)~~

~~4.   이해관계자가 경비를 부담하는 교통, 숙식 등 편의제공 및 찬조금품 수수 행위~~

~~5.   이해관계자와의 금전차용, 대출보증 요구 행위~~

~~6.   이해관계자에게 인사에 있어서 우대 및 특혜 요청 또는 인사 등 청탁을 하는 행위~~

~~7.   이해관계자에게 경조사를 알리거나 경조금을 수수하는 행위~~

~~8.   포스코와의 거래성사를 위해 경쟁사 간에 입찰담합 등 부당공동행위~~

~~9.   기타 윤리규범 위반 행위~~

제 7 조 (보상 및 심의)

1.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정도경영실내 감사업무 조직장이~~ 정도경영실장이 신고자의 보상금 수급자격 심의 및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결정하고, 이는 ~~수령하여~~ 비밀이 보장되고 수령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   보상금 지급 조건 등

1.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첨1’과 같다.

2.   비윤리행위 조사의 효율을 위하여 비윤리행위에 가담한 자가 정도경영실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감경 조치할 수 있다.

③   보상금 지급 제외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2.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업무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비윤리행위 신고시
단, 공금횡령, 회사 자산 절도 등과 같이 회사의 자산에 직접적인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신고하거나 정부관계자에게 뇌물 기타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 가능

3.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정도경영실 및 기타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4.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5.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6.   윤리적 또는 컴플라이언스 위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령,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7.   정도경영실 직원이 신고한 경우

8. 신고자가 비위행위에 연루된 경우

9.   기타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보상 심의

1.   해당사안에 대한 정도경영실내 감사업무 조직장은 보상금 지급여부와 금액 확정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 보상 심의위원회에 보상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상심의는 요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보상 심의 회의는 별첨2의 신고 보상 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다.

⑤   보상금 환수
보상금 지급 후에 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경우,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별첨

별첨1: 신고 보상 기준

별첨2: 신고 보상 심의위원회 운영